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42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4211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3202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9. 2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32020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망 C의 3분의 1 지분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1.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 C의 3분의 1 지분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8. 9. 접수 제1015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B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피고는 다른 형제들이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게 되자 망 C와 함께 생활하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치매에 걸린 망 C의 간병을 하였고, 같은 기간 망 C의 병원비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②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졌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그때로부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2017. 10. 23.까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③피고와 B를 제외한 망 C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F, G, H, I 역시 이 사건 분할협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였다.

④위와 같이 피고가 망 C의 간병을 하면서 병원비를 부담해온 점이나 망 C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와 B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약을 통해 망 C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정하고, 이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망인의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약에는 기여분 산정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산정 협정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약을 통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B이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정한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분할 결과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판사 오지영, 판사 양철순